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25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고동진·서일준·김소희

박충권 · 성일종 · 박수민

김위상 · 강승규 · 김성원

박성훈 • 이성권 • 김대식

박정훈 • 이달희 • 김상훈

박상웅 • 박덕흠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5까지"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워으로 본다.
-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3항에 따라 진 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특허법」 제128조의3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 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u>제128조의2</u> 및 제130조부터 제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5까
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지</u>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생 략)	대한 공무원 의제)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u>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u>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u>다.</u>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3항
	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
	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
	2.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
	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신 설>

제47조(위증죄) ① (생 략) <u><신 설></u>

① (생 략) <신 설> 제46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제30조에 따라 준
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